

定 款

2025. 4. 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스튜디오협회"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Studio Association (약칭 KSA)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는 주사무소를 인천광역시, 분회를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한국대중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나아가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난립되어 있는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들을 정립시켜 선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일익을 하고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 ②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
- ③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여업의 합리적 제반 사업 운영 보급 및 지원
- ④ 국내외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정보 및 상호 교류
- ⑤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 ⑥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급
- ⑦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산업의 질서 실태 조사 및 보고와 시정
- ⑧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제안, 보급, 지원
- ⑨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와의 문화교류 활성화 등
- ⑩ 불법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제도 설립 및 제도
- ⑪ 불법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안 및 지원
- ⑫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타 산업과의 교류 창구 등
- ⑬ 기타 제3조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⑭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산업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보급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사)은 정회원(사), 준회원(사), 특별회원(사)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정회원(사) : 영상 및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스튜디오 건물 소유주 포함) 대여업 또는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위탁 운영사업, 그리고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한 영상 콘텐츠 세트 제작 사업을 하는 자(회사)
- ② 준회원(사) : 500명 이하의 종합영상콘텐츠제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건물주 또는 위탁운영사로서 제5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회사). (준회원(사)은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정회원(사)으로 자격을 바꿀 수 있다.)
- ③ 특별회원(사) : 본 회의 재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회사).

제 6 조 (회원의 가입)

- ① 정회원(사)과 준회원(사)은 정회원(사) 1인(사)의 추천과 본회 임원진 1인의 추천이 필요하며 추천서를 첨부하여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특별회원은 정회원(사) 1인 이상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사)은 본 회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으며, 의안의 발의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준회원(사)은 본 회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으며, 의안의 발의권과 의안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③ 본회 임원을 선거할 경우 정회원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④ 본 회의 제반행사 및 사업에 참가 또는 협력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제5조에 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정회원
- ② 제10조에 따른 본인의 탈퇴신고
- ③ 제11조에 따른 회원의 제명
- ④ 회원의 사망

제 10 조 (회원의 탈퇴신고)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단, 입회금과 제반 회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①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③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④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

제 12 조 (회원의 자격 회복)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이 제5조 제1항에 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회복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회장에게 입증함으로써, 제6조에 정한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와 같이 회복 또는 취득한 자격에 대응하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13 조 (회원의 협회 가입비 및 회비)

- ① 정회원(사)의 회비는 ₩300,000/月이다. 다만, 1년 회비를 선납부할 경우 정회원은 ₩3,000,000/年이다.
- ② 준회원(사)의 회비는 ₩100,000/月이다. 다만, 1년 회비를 선납부할 경우 준회원은 ₩1,000,000/年이다.
- ③ 가입비는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사)이어야 한다. 단, 감사는 회원(사)이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감사직의 취임은 정회원(사) 또는

이사의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이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④ 감사 1인 이상

제 15 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 ①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한다.
- ④ 임기가 완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부회장 포함)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총회의 소집 요구
 -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
-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 및 이사가 수명인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9 조 (임원의 위임)

임원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 중 1인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한하여, 위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위임 받은 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중에 회장 또는 부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정관에 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0 조 (임원의 해임 및 사퇴)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정관에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임원의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 ① 임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③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 ⑤ 본 회의 이사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불참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로 인한 불참
2. 개인 사유 중 집안의 경조사
3. 업무로 인한 출장(국내, 국외)

제 21 조 (임원의 교체)

- ① 제19조에 의거하여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신임 이사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하여 이사 결위 후 15일 내에 후보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신임 이사 후보는 정회원 5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선임한다.

제 22 조 (임원의 협회 연회비)

- ① 본회 회장의 회비는 ₩600,000/月이다. 다만, 1년 회비를 선납부할 경우 ₩6,000,000/年이다.
- ② 본회 부회장의 회비는 ₩500,000/月이다. 다만, 1년 회비를 선납부할 경우 ₩5,000,000/年이다.
- ③ 본회 이사의 회비는 ₩400,000/月이다. 다만, 1년 회비를 선납부할 경우 ₩4,000,000/年이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총회일 7일 전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26 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7 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 ②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 ③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 28 조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 ① 회의 일시 및 장소
- ② 출석자 수
- ③ 의사진행 내용
- ④ 의결 사항 및 찬부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일 1일 전에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등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⑦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설치

제 33 조 [설치]

본회는 사업 및 운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설치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 34 조 [운영]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운영을 하며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발기인 또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특별회계)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9 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 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도별 결산은 결산 시에 업무 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4. 2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회계연도)

본 회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